



부록

2007

1. 위원 명단
2. 설립근거 및 기능
3. 연혁
4. 기구
5. 사무처 기구 및 인원
6. 2007년도 예·결산
7.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통계
8. 2007년도 국정감사 주요 내용
9. 2007년도 발간물 목록
10. 2007년도 보도자료 목록
11. 시정권고 심의기준
12. 선거기사 심의기준
13. 위원회 서비스현장 전문

1. 위원 명단

(2007년 12월말 현재)

서울 제1 중재부		서울 제2 중재부	
성명	주요경력	성명	주요경력
 <p>위원장 조준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초대 대표간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 사법개혁위원회 위원장 • 변호사(현) 	 <p>최영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법연수원 교수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현)
 <p>황정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서울동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현) 	 <p>김태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 지역신문발전위원장 • 다섯수레 대표(현)
 <p>안병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기자협회 회장 • 서울신문 편집부국장 • 내일신문 편집국장 · 편집위원장 	 <p>변혁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지검 차장검사 • 변호사(현)
 <p>박영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합뉴스 심의실장 • 연합뉴스 논설위원 • 한국기자협회 한국기자상 심사위원장 	 <p>한국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춘천CBS 본부장 • CBS 기획조정이사 • CBS 상무이사
 <p>오육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변협 공보이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총무이사 • 변호사(현) 	 <p>김정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언론학회 이사 • 중앙일보 독자위원회 위원장 • 한양대 신방과 교수(현)

서울 제3 중재부		서울 제4 중재부	
성명	주요경력	성명	주요경력
 정원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법원 재판연구관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현) 	 김동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지법 부장판사 •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현)
 부위원장 노향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기자협회 회장 • 한겨레신문 편집부국장 • 월간 말 발행인 • 언론중재위원회 전문위원 	 감사 전세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달청장 • 감사원 감사위원 • 변호사(현)
 이수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일보 논설위원 • 평화통일자문회의 중앙위원 • 80년 해직언론협의회 공동회장 	 김지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향신문 편집인 · 상무 •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심의위원(현) • 한국가톨릭신문출판협회장(현)
 김서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언론정보학회 기획이사 •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정책위원 • 성공회대 신방과 교수(현) 	 김영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학회 부회장 • 한국언론학회 회장 • 연세대 신방과 교수(현)
 이백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지방변호사회 총무이사 • 경희대 행정대학원 감사 • 변호사(현) 	 이정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경향신문, 국민일보 기자 • 세계경영연구원 수석연구위원(현)

서울 제5 중재부		서울 제6 중재부	
성명	주요경력	성명	주요경력
 정대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법원 재판연구관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현) 	 박정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법원 재판연구관 •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현)
 장윤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일보 기자 • 한겨레신문 이사 • 미디어오늘 논설고문 	 최충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 편성실장 • 방송위원회 심의위원장 • 경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현)
 유효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법원 재판연구관 •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 변호사(현) 	 김동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론중재위원회 전문위원 • 방송위원회 심의위원 • 중앙일보 공익사업이사보
 이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일보 기자 • 한겨레신문 제작국장 • 전자신문 상무이사 	 한부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고검 검사장 • 법무부 차관 • 변호사(현)
 방민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일보 논설위원 • 한국일보 논설위원실 실장 	 조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지법 판사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변호사(현)

부산 중재부		대구 중재부	
성명	주요경력	성명	주요경력
 고종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산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현) 	 김태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지법 상주지원 지원장 • 대구지법 부장판사(현)
 정영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일보 편집국장 • 경북일보 사장 	 여원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일신문 기자 • 영남일보 편집국장 • 영남일보 논설위원
 유숙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시 여성단체협의회 부회장(현) • 부산시 여성의용소방대 연합회장(현) 	 박정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위원회 보도교양 심의위원(현) •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회장(현) • 경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현)
 김민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방송학회 회장 • 대통령자문국가균형발전위 위원 • 시민사회연구원 이사장 • 동아대 명예교수 	 감사 박충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원장 • 대구대 인력개발 원장(현) • 대구대 사회과학대학 가정복지학과 교수(현)
 유상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지법 판사 • 부산고법 판사 • 변호사(현) 	 김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고법 판사 • 대구지법 부장판사 • 변호사(현)

광주 중재부		대전 중재부	
성명	주요경력	성명	주요경력
 김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지법 목포지원 지원장 • 광주지법 부장판사(현) 	 손차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지법 홍성지원 지원장 • 대전지법 부장판사(현)
 이 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일보 논설위원 • 무등일보 편집인 · 주필 	 김강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자협회 충남지부 부지부장 • 대전일보 논설위원 • 국도일보 대표이사
 이수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여성학회 이사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 목포대 기획협력처장 • 목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현) 	 송인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단법인 시민연론 대표(현)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현)
 김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기자협회 부회장 • 광주일보 정치부장 • 무등일보, 광남일보 편집국장 • 지역활성화연구소장(현) 	 이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론개혁시민연대 신문개혁 위원장 •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현) • 한서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현)
 안재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 • 광주지검 부장검사 • 변호사(현) 	 이규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 대전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변호사(현)

경기 중재부		강원 중재부	
성명	주요경력	성명	주요경력
 윤우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지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법 부장판사(현) 	 이성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동부지법 판사 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현)
 박석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인일보 논설위원 수원방송 보도제작국장 	 유영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원일보 편집국장 강원일보 월간국장 동서산업디자인개발원 원장
 정흥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원지방검찰청 부장검사 부산고등검찰청 검사 (대검검찰연구관 직무대리) 변호사(현) 	 한진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송위원회 연구위원 한국방송학회 회장(현) 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현)
 안중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세대 미디어 영상학부 교수(현) 	 박형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춘천지방법원 판사 강원지방변호사회 회장 변호사(현)
 김정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양대 신방과 교수 중앙대 광고홍보학과 교수(현) 	 유현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원일보 기자 강원도민일보 편집부국장 문화커뮤니티 '금토' 대표(현)

충북 중재부		전북 중재부	
성명	주요경력	성명	주요경력
 이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전고등법원 판사 청주지법 제천지원장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현) 	 서경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고등법원 판사 전주지법 부장판사(현)
 부위원장 이도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상담 중앙협의회 회장 청주 YMCA 명예사무총장(현) 충북범도민연대 회장(현) 	 하명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합뉴스 전북지사장 한국지역정책연구원 자문위원 전북언론문화연구원장
 박종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북도정감사위 위원장 성균관행정연구회 고문 청주대 사회과학대 명예학장 	 심병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법원 재판연구관 전주지법 부장판사 변호사(현)
 김태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주지검 검사 충청북도인사위원회 자문변호사 변호사(현) 	 권혁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언론학회 회장(현) 전북대 신방과 교수(현)
 허석열	<ul style="list-style-type: none"> KBS청주방송 시청자위원 공간환경연구회 회장 충북대 사회학과 교수(현) 	 김은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현)

경남 중재부		제주 중재부	
성명	주요경력	성명	주요경력
 김종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현) 	 김상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법원 재판연구관 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현)
 김창룡	<ul style="list-style-type: none"> AP통신사 서울 특파원 한국언론재단 연구위원 인제대 언론정치학부 교수(현) 	 고창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제주산업정보대학 교수 제주대학교 헌법학 강사(현)
 김남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언론정보학회 회장 경남대 정치언론학부 교수(현) 	 서승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주 MBC기자 연합뉴스 제주지사장 제주언론인클럽 부회장
 백경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산지검 검사 창원지검 검사 변호사(현) 	 허영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민일보사 문화부장 제민일보사 편집부국장 제주민예총 회장(현)
 김인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산MBC 시청자위원회 부위원장 창원대 언론정보학과 교수(현) 	 권 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변호사(현)

2. 설립근거 및 기능

가. 설립근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나. 주요 기능 및 역할

- 언론조정·중재신청 처리 및 시정권고 업무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언론피해구제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 언론보도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구제방법 안내
- 언론피해구제제도의 홍보 및 예방 교육

3. 연혁

- 1981.03.31. 언론중재위원회 설립, 창립총회 개최
- 제1기 중재위원 39명 위촉(안우만 위원장 취임)
 - 서울 4개 중재부와 부산, 대구,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전남, 제주 등 9개 지역중재부 설치(총 13개 중재부)
 - 사무국(서울 중구 의주로 1가 1 백초빌딩) 및 9개 지역사무소 설치
- 1981.04.29. 언론중재위원회 현판식 (사무국)
- 1984.03.02. 경남중재부 신설
- 1985.04.03. 임규운 위원장 취임
- 1985.04.21. 사무국을 현주소(서울 중구 태평로1가 25 프레스센터 15층)로 이전
- 1986.02.24. 정희택 위원장 취임
- 1987.11.28.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재위원을 42명에서 70명으로 증원조정하고, 사무국을 사무처로, 사무국장을 사무총장으로 승격 조정

- 1991.03.29.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 1993.03.31. 김두현 위원장 취임
- 1995.12.30.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 결정권’을 부여하는 등 언론중재제도 강화, 1996.7.1 시행)
- 1996.07.01. 개정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충남중재부를 대전중재부로 명칭 변경, 중재위원 75인으로 증원하고 서울제5중재부 증설
- 1999.04.09. 박영식 위원장 취임
- 2000.02.16.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에 따라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시 언론중재위원회에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
- 2001.03.30. 창립 20주년 기념행사 (서울 63빌딩 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
- 2004.04.01. 상담 및 교육 전담 부서 신설
- 2005.01.0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기존의 조정제도 외에 중재제도 도입
 -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조정 및 중재
 - 인터넷 신문, 조정 및 중재대상에 포함
 - 구술 및 전자우편에 의한 신청 등
- 2005.03.31. 조준희 위원장 취임
- 2005.07.28.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05.09.02. 언론중재법에 따라 중재위원을 80인으로 증원하고 서울제6중재부 증설
- 2006.06.29.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및 위헌제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 언론중재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정정보도청구권 합헌
 - 시정권고제도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 없으므로 청구 각하
 -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가처분으로 하는 규정은 위헌
- 2007.04.27. 위원회 새 CI 선포
- 2007.07.01. 홍보팀, 조사분석팀 신설 등 위원회 직제 개편

4. 기구

가. 위원총회

- 구성 : 중재위원 80명
- 기능
 - 임원, 운영위원 및 시정권고위원 선출
 -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 승인
 - 기본규칙의 제정 및 개정

나. 운영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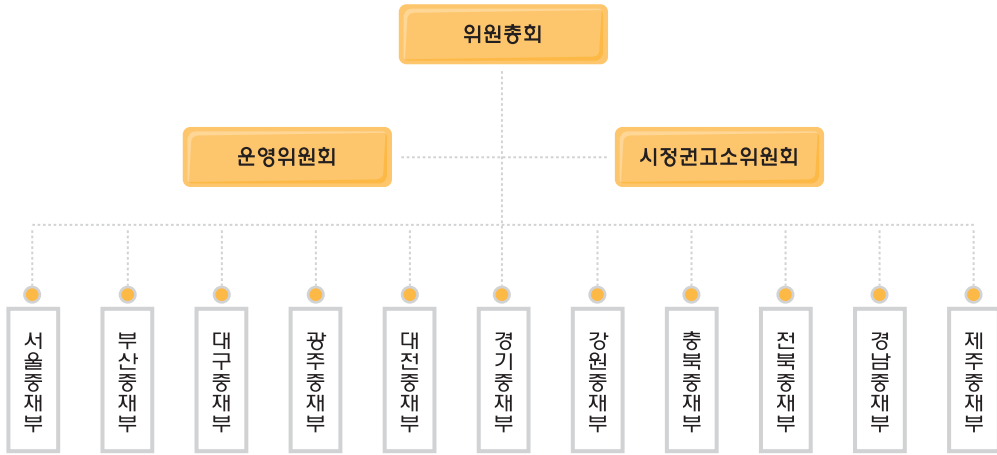
- 구성 : 중재위원 9명
- 기능
 - 위원총회에서 위임한 안건 처리
 - 위원총회에 상정할 안건 검토
 - 제 규칙의 제정 및 개정
 - 선거기사심의위원 위촉 동의

다. 시정권고소위원회

- 구성 : 중재위원 7명
- 기능
 - 언론의 보도내용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을 권고
 - 시정권고 세부 기준 및 절차 제정

라. 중재부

- 구성
 - 중재위원 5명
 - 전국 16개 중재부(서울 6, 지방 10)
- 기능 : 조정 · 중재신청에 따라 조정 · 중재업무 처리



5. 사무처 기구 및 인원

가. 기구

- 2본부1센터 (조정심의본부,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 운영본부)

9팀 10지역사무소



나. 인원 현황

구분	별정직	일반직	전문직	기능직	계
정원	1	47	3	19	70
현원	1	45	-	19	65

6. 2007년도 예·결산

(단위: 백만원)

관리항목	내역	예산액	집행액	잔액
운영비	인건비	4,291	4,287	4
	경비	1,451	1,398	53
사업비	심의사업	924	769	155
	조사연구, 발간	277	255	22
	홍보	606	599	7
합계		7,549	7,308	241

7.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통계

가. 주요 업무 추진실적

<회의>

(1) 총회

- 일 자 : 2007. 2. 12.
- 장 소 :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 참 석 : 중재위원 41명
- 주요내용 :
 - 업무 현황 및 경과보고
 - 2006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안, 200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의결
 - 운영위원 9명 및 시정권고위원 7명 선출

(2) 운영위원회

(가) 제1차

- 일 자 : 2007. 2. 6.
- 주요내용 : 총회 상정안 검토(2006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 승인안, 200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안, 임원 선출안)

(나) 제2차

- 일 자 : 2007. 6. 20.
- 주요내용 : 사무처직제규칙 · 위임전결규칙 · 인사규칙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개정안 심의의결

(다) 제3차

- 일 자 : 2007. 8. 20.
- 주요내용 : 제17대 대선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심의의결

(라) 제4차

- 일 자 : 2007. 11. 6.
- 주요내용 : 문서관리규칙 · 회계규칙 · 보수규칙 개정안 심의의결

(마) 제5차

- 일 자 : 2007. 12. 6.
- 주요내용 : 제18대 총선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심의의결

〈행사〉

(1) 정기세미나

- 일 자 : 2007. 9. 6. ~ 2007. 9. 7.
- 장 소 : 대전 유성호텔
- 주 제 : 언론피해구제 효과 제고를 위한 관련 제도 고찰
 - 인격권 보호의 효과적인 수단으로서의 손해배상제도
 - 고충처리인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언

- 발표자 : 김동하 중재부장(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이승선 교수(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 사회자 : 한진만 위원(강원중재부)
- 참석자 : 중재위원, 언론사 기자, 포털 관계자 등 70여명

(2) 지방토론회

(가) 부산지방토론회

- 일 자 : 2007. 4. 10.
- 장 소 : 부산 코모도호텔
- 주 제 : 언론조정신청에서 보인 '피해' 주장과 취재관행의 문제
- 발표자 : 김민남 위원(부산중재부)
- 사회자 : 고종주 중재부장(부산지법 부장판사)
- 참석자 : 부산지역 언론계, 법조계, 학계, 관계, 사회단체 인사 등 100여명

(나) 강원지방토론회

- 일 자 : 2007. 7. 10.
- 장 소 : 춘천 세종호텔
- 주 제 : 사이버 상에서의 개인권익의 침해와 구제방안
- 발표자 : 한진만 위원(강원중재부)
- 사회자 : 박형일 위원(강원중재부)
- 참석자 : 강원지역 언론계, 법조계, 학계, 관계, 사회단체 인사 등 100여명

(다) 광주지방토론회

- 일 자 : 2007. 10. 16.
- 장 소 : 광주 프라도호텔
- 주 제 : 언론중재제도의 활성화 방안 모색
-언론소비자 입장을 중심으로-
- 발표자 : 김 성 위원(광주중재부)
- 사회자 : 김규장 중재부장(광주지법 부장판사)
- 참석자 : 광주지역 언론계, 법조계, 학계, 관계, 사회단체 인사 등 90여명

(3) 중재위원 워크숍

- 일 자 : 2007. 4. 27. ~ 2007. 4. 28.
- 장 소 : 칠갑산 호텔 샬레 (충남 청양군)
- 주 제 : 중재제도 활성화 및 조정만족도 제고방안
- 발표자 : 박정호 중재부장(서울제6중재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사례분석을 통한 중재제도의 활성화 가능성의 검토
 - 이용성 위원(대전중재부)
 - 조정만족도 제고방안 : 위원회 이용만족도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 사회자 : 김정기 위원 (서울제2중재부)

(4) 지방언론인 간담회

- 총 20회 개최
 - 위원장 주최 발행인 초청 간담회 4회(충북, 제주, 경기, 경남)
 - 10개 지역중재부 주최 편집국장 등 언론인 초청 간담회 16회

〈감사〉

(1) 국정감사 수감

- 일 자 : 2007. 10. 22. (2007. 11. 2. 확인감사)
- 장 소 : 프레스센터 19F
- 주요 질의 내용
 - 인터넷포털 및 언론사닷컴 등의 조정·중재대상 포함 및 게시중지·기사삭제 청구권 도입 등에 관한 사항
 - 참여정부 조정신청 증가에 관한 사항
 - 정정·반론보도의 형식 및 크기에 관한 사항 등
 - 손해배상청구의 조정액 관련 사항
 - 중재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 상담센터에 관한 사항
 - 선거보도심의 기구 관련 사항
 - 신정아씨 누드 사진 게재 관련 사항

(2) 회계감사 실시

(가) 06년도 하반기 회계 감사

- 일 자 : 2007. 1. 29.
- 감사자 : 전세봉, 박충선 감사
- 내 용 : 2006년 하반기 회계처리 결과
- 결 과 : 특이사항 없음

(나) 외부 회계 감사

- 일 자 : 2007. 2. 26 ~ 2007. 3. 9.
- 감사자 : 회계법인 이촌
- 내 용 : 2006년도 전체 회계처리 결과
- 결 과 : 특이사항 없음

(다) 07년도 상반기 회계 감사

- 일 자 : 2007. 7. 27.
- 감사자 : 전세봉, 박충선 감사
- 대 상 : 2007년 상반기 회계처리 결과
- 결 과 : 특이사항 없음

〈발간〉

(1) 2006년도 「연차보고서」

- 일 자 : 2007. 3. 30.
- 부 수 : CD-R 1,000매, 책 300부
- 내 용 : 2006년도 조정 및 중재신청 · 시정권고 현황 및 사례, 주요업무 추진현황 등

(2) 2007년도 계간 「언론중재」

(가) 봄호(제102호)

- 일 자 : 2007. 3. 30.
- 부 수 : 1,200부
- 특집주제 : '헤드라인 저널리즘' 과 언론윤리

(나) 여름호(제103호)

- 일 자 : 2007. 6. 30.
- 부 수 : 1,200부
- 특집주제 : 2007 대통령 선거보도 주요이슈 점검

(다) 가을호(제104호)

- 일 자 : 2007. 9. 30.
- 부 수 : 1,200부
- 특집주제 : 언론피해구제제도 효과 제고를 위한 관련 제도 고찰

(라) 겨울호(제105호)

- 일 자 : 2007. 12. 30.
- 부 수 : 1,200부
- 특집주제 : 언론법제 교육의 현실과 과제

(3) 「국내언론관계판결집」(제14집)

- 일 자 : 2007. 6. 30.
- 부 수 : 1,200부
- 내 용 : 반론보도, 정정보도, 손해배상 청구사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 사례 등

(4) 홍보책자

- 일 자 : 2007. 5. 16.
- 부 수 : 40,000부
- 내 용 : 위원회 이용절차 안내 및 이용 전반에 관한 사항 등

(5) 점자 홍보책자

- 일 자 : 2007. 10. 5.
- 부 수 : 40,000부
- 제 목 :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언론중재위원회가 도와 드립니다』

(6)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 교재

- 일 자 : 2007. 12. 17.
- 부 수 : 각 2,000부씩 총 4,000부
- 종 류 :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 및 『언론보도에 따른 분쟁,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7) 소식지

- 일 자 : 매월 20일(2007. 12월호/90호까지 발간)
- 내 용 : 위원회 소식, 위원단상, 조정사례, 가족마당, 위원동정 등

〈기타〉

(1) 위원회 이용만족도 조사

- 조사기간 : 2007. 10. 29. ~ 2007. 11. 21.
- 조사대상 : 언론조정(중재)제도 이용자(신청인 196명, 피신청인 115명)
위원회 상담창구 이용자(상담신청인 342명)
위원회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 교육 이용자(수강자 300명)
- 조사기관 : 한국신용정보(주)
- 조사내용 :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 제도에 대한 만족도 및 운용활성화 방안 모색과 상담 및 교육 등 서비스에 대한 점검 및 개선 방안 모색

(2) CI 제작

- 기 간 : 2007. 2. ~ 2007. 4.
- 업 체 : (주)시디알어소시에이츠
- 내 용 : 언론중재위원회 CI 기본시스템, 응용시스템 및 슬로건 제작

(3) 어린이 홈페이지 구축

- 일 자 : 2007. 11. 20.
- 업 체 : (주)애드쿠아인터랙티브
- 구축내용 :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좀 더 쉽게 위원회 관련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어린이 홈페이지 제작

(4) 조정·중재사건기록 데이터베이스 구축

- 구축기간 : 2007. 5. 20. ~ 2007. 5. 31.
- 구축내용 : 2006년도 사건기록 이미지 파일 및 서지데이터 DB 구축

(5) 직원 내부 교육

(가) 소송실무교육

- 기 간 : 2007. 5. 29. ~ 2007. 6. 28 (총10회)
- 장 소 : 6층 회의실
- 강 사 : 구유희 변호사(상담교육팀 차장)

(나) 외부강사초청 교육

- 1차

- 일 자 : 2007. 6. 1.
- 장 소 : 6층 회의실
- 강 사 : 손정필(평택대학교 상담학 교수)
- 주 제 : 셸프리더십

- 2차

- 일 자 : 2007. 9. 3.
- 장 소 : 6층 회의실
- 강 사 : 이석환(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 주 제 : 성과관리시스템의 필요성과 개요

- 3차

- 일 자 : 2007. 10. 4. ~ 2007. 10. 25. (총4회)
- 장 소 : 6층 회의실
- 강 사 : 이병호(윌리엄 석세스 트레이닝 전문 컨설턴트)
김익수(서울디지털대학 문예창작과 초빙교수)
- 주 제 : 성공커뮤니케이션 스킬 / 프리젠테이션 기법,
업무문서 작성의 논리구조에 대한 이해

- 4차

- 일 자 : 2007. 12. 12.
- 장 소 : 6층 회의실
- 강 사 : 김지숙(태평양 뷰티 교육센터 교육팀장)
- 주 제 : 친절과 유형별 응대기법

나. 주요업무 통계

(1) 조정신청 처리현황

[2007. 1. 1. - 2007. 12. 31.]

청구명	청구건수	처리결과							피해 구제율 (%)
		합의	직권조정결정		조정 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정정보도	551	223	12	17(1)	103(5)	22	3	171(94)	63.7
반론보도	115	52	2	1	22	4	1	33(25)	71.8
추후보도	28	7			2	2		17(14)	80.8
손해배상	349	77	8	14(1)	67	14	2	167(124)	63.1
계	1,043	359	22	32(2)	194(5)	42	6	388(257)	64.8

* ()안의 숫자는 합의 및 조정결정 중 동의 외에 피해구제보도가 된 건수

* 피해구제율 = 피해구제건수 / 조정건수

(2) 중재신청 처리현황

[2007. 1. 1. - 2007. 12. 31.]

청구명	청구건수	처리결과					
		중재결정	중재화해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심리종결
정정	2	2					
반론							
손배	12	12					
계	14	14					

(3) 시정권고소위원회 처리 현황 : 총 12회 개최

[2007. 1. 1. - 2007. 12. 31.]

자체심의 시정권고	신청심의						시정권고 총계
	신청건수	시정권고	기각	각하	취하	기타	
200	39	2	18		12	7	202

(4) 제17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처리 현황

[2007. 8. 21. - 2008. 1. 18.]

자체심의 의결현황						시정요구심의 의결현황
경고문게재	경고	주의	권고	유예	계	반론보도 게재결정
2	13	19	1		35	2

(5) 언론피해 상담 및 교육·홍보 현황

- 상담현황 : 총 2,343건 상담

[2007. 1. 1. - 2007. 12. 31.]

상담건수	처리결과							조정신청 접수
	조정절차 안내	법적절차 안내	재상담 안내	타기관 안내	자체종결	기타	총계	
2,343	1,776	291	81	221	23	218	2,610	696

* 상담처리결과 중 중복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담건수와 상담처리결과와의 합계가 불일치

* 자체종결은 언론피해와 무관하거나 조정절차 또는 법적 절차로는 구제가 불가능한 사안과 관련한 상담을 의미하며, 조정신청 접수는 상담 건수 중 조정 신청으로 연결된 것을 의미

- 교육현황 : 총 72회 실시

[2007. 1. 1. - 2007. 12. 31.]

구분	언론사	대학	공·사기업	지자체	기타	합계
교육횟수	35	10	9	12	6	72

- 홍보현황 : 매체광고 총 491회 집행

[2007. 1. 1. - 2007. 12. 31.]

구분	TV	신문	라디오	인터넷 등 기타	합계
광고횟수	269	91	28	103	491

8. 2007년도 국정감사 주요 내용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질의위원
가. 인터넷포털 및 언론사닷컴에 대한 피해구제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포털 및 언론사닷컴에 대한 피해구제 방안 마련 및 '인터넷신문'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혜숙, 김재운, 김희선, 손봉숙, 유선호, 이광철, 장윤석, 정병국, 천영세 위원
나. 참여정부 출범 후 국가기관의 조정신청 급증 및 피해구제율 증가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정부의 조정신청 급증으로 언론자유에 대한 침해 논란이 있고, 조정신청이 '언론 괴롭히기'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의견 정부의 조정신청 통계 중 일부만 인용하여 정부의 조정신청을 비판하는 것은 문제라는 견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학원, 최구식 위원 이광철 위원
다. 선거보도심의 기구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보도심의기구를 언론중재위로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 선거기사심의위의 자체심의를 강화하고 객관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심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언론중재위가 추천단체로부터 추천받지 않은 자를 선거기사심의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자의적인 해석에 의한 것이라는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형주 위원 우상호, 지병문 위원 장윤석 위원
라. 신정아씨 누드 사진 게재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정아 씨 누드사진 유출 관련 시정권고 결정을 공표하지 않은 이유 신정아 씨 누드 사진을 그대로 게재한 언론사닷컴에 대한 시정권고가 이뤄지지 않는 점에 대한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청래 위원 천영세 위원
마. 정정 및 반론 보도 등의 방식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정 및 반론보도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병국, 정청래 위원
바. 중재위원 구성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중재위원이 특정 언론사 출신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견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재철 위원
사. 상담센터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 명칭을 개칭해야 한다는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손봉숙 위원
아. 손해배상청구의 조정액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손해배상청구의 조정액이 감소하고 있는데 적극적인 권리 구제차원에서 피해자를 도와줘야 한다는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상호 위원

9. 2007년도 발간물 목록

	발간물명	발행일	담당 부서
1	2006년도 연차보고서	2007. 3. 30.	조사연구팀
2	계간지 「언론중재」 봄호	2007. 3. 30.	조사연구팀
3	계간지 「언론중재」 여름호	2007. 6. 30.	조사연구팀
4	계간지 「언론중재」 가을호	2007. 9. 30.	제도연구팀
5	계간지 「언론중재」 겨울호	2007. 12. 30.	제도연구팀
6	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14집	2007. 6. 30.	조사연구팀
7	언론조정신청에서 보인 '피해' 주장과 취재관행의 문제 (2007년 부산지방토론회 자료집)	2007. 4. 5.	조사연구팀
8	사이버 상에서의 개인권익의 침해와 구제방안 (2007년 강원지방토론회 자료집)	2007. 7. 5.	제도연구팀
9	언론중재제도의 활성화 방안 모색 (2007년 광주지방토론회 자료집)	2007. 10. 11.	제도연구팀
10	언론피해구제효과 제고를 위한 관련 제도 고찰 (2007년 정기세미나 자료집)	2007. 9. 13.	제도연구팀
11	교육 교재 2종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 「언론보도에 따른 분쟁,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2007. 12. 17.	상담교육팀
12	위원회 국문 홍보책자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언론중재위원회가 도와 드립니다」	2007. 5. 10.	교육홍보팀
13	위원회 점자 홍보책자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언론중재위원회가 도와 드립니다」	2007. 10. 5.	홍보팀
14	중재제도 활성화 및 조정만족도 제고 방안 (2007년 중재위원 워크숍 자료집)	2007. 4. 25.	기획혁신팀
15	2007년도 언론중재위원회 이용만족도조사	2007. 12. 17.	기획혁신팀
16	소식지 PAC News	매월 20일	기획혁신팀

* 2007. 7. 1. 자 직제개편에 따라 기존 조사연구팀, 법무상담팀, 교육홍보팀 등이 제도연구팀, 상담교육팀, 홍보팀 등으로 개편됨.

10. 2007년도 보도자료 목록

배포일자	제목 및 내용
2007. 1. 23.	언론보도 피해구제율 '경남, 전국 1등'
2007. 1. 29.	2006년 조정·중재신청 처리결과
2007. 4. 2.	부산지방토론회 개최
2007. 4. 2.	설립 26돌 언론중재위원회
2007. 4. 27.	언론중재위원회, 새 CI 선포!
2007. 7. 5.	강원지방토론회 개최
2007. 7. 16.	"포털도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으로 삼아야"
2007. 8. 21.	제 17대 대선 선심위 발족
2007. 8. 30.	2007 정기세미나 개최
2007. 9. 7.	"언론중재 통한 언론분쟁 손해액, 법원판결보다 훨씬 낮아"
2007. 10. 8.	"초상권, 사생활 관련분쟁 73% 해결"
2007. 10. 10.	광주지방토론회 개최
2007. 10. 16.	"언론분쟁 증가, 언론 인격권 침해 예방 노력해야"
2007. 10. 24.	언론중재위, 중앙-문화 상대 정정보도 요청
2007. 11. 21.	「어린이 언론중재교실」(어린이용 홈페이지) 오픈
2007. 12. 12.	제 18대 총선 선심위 발족
2007. 12. 26.	위원회 이용만족도 조사 결과

11.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장 개인적 법의 침해금지

제1조(사생활 보호)

- ①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헌법 제17조)
- ②언론은 사생활 침해가 되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또는 사적인 전화나 통신내용 등을 당사자의 동의없이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헌법 제17조)
다만 공표에 관하여 우월한 공공의 이익이 있고 그 공표가 공적인 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조(명예훼손 금지)

- ①언론은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사실을 과장 또는 왜곡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헌법 제21조 제4항, 형법 제307조 제2항, 민법 제764조)
- ②언론은 사실의 공표라 할지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형법 제307조 제1항)
- ③언론은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형법 제308조)
- ④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더라도 공표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범죄사건 보도등)

- ①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이하 같다)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헌법 제27조 제4항, 형법 제126조)
다만 수사당국이 공개수사를 하는 경우 또는 행위자의 특성상 사회적 중요성을 지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②언론은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 또는 제보자, 신고자, 고소인, 고발인, 참고인, 증인 등에 대해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8조)
다만 본인이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등)

- ①언론은 성폭력범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 ②언론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청소년 매매행위, 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과 관련하여 대상 청소년 및 피해 청소년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조(공표금지)

- ①언론은 인격권 보호를 위해 다음 각호의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 1. 소년보호사건에 관하여 미성년피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소년법 제68조)
 - 2. 정신질환자에 관한 보도에서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
 - 3. 가정법원에서 처리중에 있거나 처리한 사건에 관련된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가사소송법 제10조)
 - 4. 기타 법률에 의하여 공표가 금지된 사항
- ②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더라도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공적인 관심사항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유괴사건 보도)

언론은 유괴사건 보도에서 유괴된 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2장 사회적 법익 침해금지

제7조(범죄 묘사)

- ①언론은 음란성, 포악성, 잔인성 등이 담긴 범죄의 수단 및 방법을 필요이상으로 설명하거나 선정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언론은 모방의 우려가 있는 범행 수법을 상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언론은 범죄행위를 미화하거나 정당한 수단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성관련 보도)

- ①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언론은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1. 성행위를 현저하게 노골적으로 묘사한 내용
 2. 혼음, 윤간, 변태적 성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 ③언론은 간통, 원조교제 등 부도덕하거나 건전하지 못한 남녀관계를 합리화하는 보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자살 보도)

- ①언론은 자살 보도시 다음 각호의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자살자(미수자 포함) 또는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
 2. 자살장소 및 자살방법, 자살까지의 자세한 경위 등의 묘사
 3. 자살에 사용된 약명과 치사량
- ②언론은 충분하지 않은 정보로 자살동기를 판단하는 보도를 하거나, 자살동기를 단정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언론은 자살을 영웅시 혹은 미화하거나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해하도록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공공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마약 및 약물보도)

- ①언론은 마약 또는 습관성 의약품의 종류, 사용량, 사용방법 내지 복용방법, 환각적 효능, 구입방법 등을 상세히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언론은 약물사용으로 인한 환각상태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폭력 묘사등)

- 언론은 가학적·피학적인 내용, 폭력 장면 또는 언어 폭력을 필요 이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충격·혐오감)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재판에 영향을 주는 보도금지)

언론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기사나 논평을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국가적 법익 침해금지

제14조(국가안전보장등)

언론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침해하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헌법 제37조 제2항)

제15조(국가기밀 누설금지)

언론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탐지하거나 수집한 군사기밀이나 외교상 기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형법 제98조 제2항 및 제113조 제1항,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군사기밀보호법 제11조 및 제12조)

12. 선거기사 심의기준

제1장 총칙

제1조(공정성)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이하 “언론사”라 한다)는 선거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다루어야 한다.

제2조(형평성)

언론사는 선거기사의 편집 및 기사배열에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조(객관성)

- ①언론사는 선거에 관련된 사실을 정확히 보도하여야 한다.
- ②언론사는 선거의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과 견해를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제4조(공익성)

언론사는 언론의 공적 사명에 충실하여야 하며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5조(정치적 중립)

언론사는 선거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제2장 기사

제6조(사실보도)

- ①언론사는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과장 또는 축소·은폐하는 등으로 왜곡하여 보도하거나 허위사실을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언론사는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허위의 사실이나 비방발언을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언론사는 정당한 근거없이 선거결과에 대한 예측보도로 유권자를 오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사실과 의견의 구별)

언론사는 선거기사에서 사실보도와 의견을 명백히 구별하여야 한다.

제8조(여론조사 보도)

- ①언론사는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까지 선거관련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선거일전 6일 이전에 공표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보도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언론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할 경우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밝혀야 한다.
- ③언론사는 여론조사결과에 대한 해석에 있어 경쟁집단간 차이가 표본오차한계 이내인 경우 단정적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여론조사결과에 대한 해설기사는 그 조사의 전제 여건과 현저히 다른 여건을 가진 상황에 대하여 그 조사결과를 임의로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⑤ 언론사는 여론조사결과를 그래프, 그림, 표 등을 이용하여 보도할 경우 경쟁자나 경쟁집단간 차이가 과장 또는 축소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인용보도)

- ① 언론사는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의견 또는 다른 매체의 보도내용을 인용하거나 개인의 글을 인용할 때는 그 출처를 밝혀야 하고, 전체 논지에서 벗어나지 않는 내용을 게재하여야 하며, 감정과 편견이 개입된 수식어의 사용을 피하여 공정하게 보도하여야 한다.
- ② 언론사는 후보자의 발언이나 정당발표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전체 논지에서 벗어나지 않는 내용을 게재하여야 하며, 감정과 편견이 개입된 수식어의 사용을 피하여 공정하게 보도하여야 한다.

제10조(인터뷰 기사)

- ① 언론사는 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의 견해나 반응을 묻는 기사는 상반된 견해를 가능한 한 균형있게 보도하여야 한다.
- ② 인터뷰 기사는 출처를 분명히 밝혀야 하며, 인터뷰한 상대방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편집, 게재하여야 한다.

제11조(외부기고 등)

- ① 언론사는 선거에 관련된 개인의 의견을 게재할 경우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② 언론사는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칼럼이나 저술을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선거일전 180일전부터 계속 연재하였고 후보자의 명의를 드러나지 않는 저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특집기획기사)

언론사는 선거기간 중에는 선거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특집기획 기사를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대담·토론기사)

언론사는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또는 대리인들간의 대담, 토론 기사를 다룰 때에는 선거쟁점에 관한 논의가 균형을 이루도록 형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장 표제 및 사진

제14조(기사제목)

언론사는 기사제목이 기사내용과 달리 축소과장되거나 왜곡되어 전달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제15조(사진 게재)

- ①언론사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사진게재 시 가능한 한 동등한 조건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 ②언론사는 사진게재에 있어 어떠한 변형이나 재구성을 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하는 사진을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언론사는 선거유세장 관련 사진보도에 있어 참가 인원이나 내용을 왜곡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장 광고

제16조(의견광고)

언론사는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유도하는 의견광고를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상업광고의 제한)

- ①언론사는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기타 물품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거나 후보자가 출연하는 광고를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②언론사는 후보자의 성명, 경력, 사진 또는 상징을 이용하여 후보자에게 선거운동효과를 주는 광고를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장 권리구제

제18조(정정보도청구권)

언론사는 선거기사내용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판명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제19조(반론보도청구권)

언론사는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이 명백한 인신공격, 정책의 왜곡선전 또는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기사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합당한 반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13. 위원회 서비스 현장 전문

언론중재위원회 전 직원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분쟁사건의 조정 및 중재를 담당하는 준 사법기구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책임과 신뢰를 바탕으로 모든 업무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합니다.

1. 우리는 모든 국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항상 인식하고, 언론보도 관련 신청사건과 민원 사건 처리에 친절과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2. 우리는 당사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전문가로서 최선을 다하여 모든 사안을 엄정하게 다루겠습니다.
3. 우리는 항상 열린 마음으로 당사자의 주장을 경청하고 높은 도덕성을 견지하여 국민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4. 우리는 인격권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바람직한 언론문화 창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지침을 정하고 성실히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 우리의 다짐 -

1. 언론중재위원회를 찾는 모든 분들을 항상 친절하고 정중한 자세로 예의를 갖추어 맞이하겠습니다.
2. 민원인의 요구사항과 불만사항은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3. 업무 처리 담당자가 자리를 비운 경우에는 즉시 다른 직원이 대신 처리해 드리거나 담당자가 나중에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담당자가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즉시 그 처리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5. 전화는 신호음이 여러번 울리기 전에 받아, 부서명과 본인이름을 밝혀 인사하고 통화를 마칠 때는 민원인이 먼저 전화를 끊으신 후에 수화기를 내려놓겠습니다.
6. 신청사건이 접수된 경우에는 담당자가 신청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담당자 이름 및 전화번호를 안내하겠습니다.
7. 신청사건의 심리기일이 정해진 경우에는 심리기일이 정해진 날로부터 1일 이내에 담당자가 신청인에게 심리기일을 통보하고, 해당 사건의 진행절차 및 준비사항 등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8. 심리에정 사건은 심리기일 등 관련정보를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해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 모든 민원서류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고, 부득이하게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연사유와 처리예정일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10. 언론피해상담이 시작되면 상담원은 자신의 이름, 소속을 분명히 밝혀 책임 있는 상담을 하겠으며, 답변은 민원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1. 상담 신청내용이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닌 경우 그 사유 및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2. 상담 이후에도 피해회복 여부 및 구제방법 등의 안내를 위해 A/S 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13. 언론분쟁 관련 교육 요청시, 빠른 시일 내에 깊이 있는 내용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 위원회를 이용하신 국민의 만족도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업무 개선에 반영하겠습니다.
15. 위원회의 발전에 관한 사항이나 불만사항, 개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의견을 주시고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성실한 답변을 드리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